

1. 개정이유

규제개선 건의를 반영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과정에서 불편 해소(안 [별지 제5호 서식 개정])

- 1)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종전의 신고증을 분실·훼손한 경우 신고서 서식에 그 사유를 적도록 서식을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9. ~ 4. 18.)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총리령 제 호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5호서식의 첨부서류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 한다.

[신고증 분실·훼손 사유]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개정안	
[별지 제5호서식] 통신판매업 휴업, 폐업, 영업재개 신고서		[별지 제5호서식] 통신판매업 휴업, 폐업, 영업재개 신고서	
첨부서류	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(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) (이하 생략)	첨부서류	(현행과 같음)
			[신고증 분실·훼손 사유]